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1항”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인터넷 신문을 포함한다)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위생용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위생용품의 제조일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생용품 안전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생산한 실적 등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

별표 2 제1호가목 중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23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u>공표하여야</u> 한다.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 ----- ----- <u>법 제23조제1항</u> ----- ----- ----- ----- ----- ----- <u>공표해야</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u>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위생용품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인터넷 신문을 포함한다)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u>

<신 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 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 정보원에 위탁한다.

<신 설>

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위생용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위생용품의 제조일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위생용품 안전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생산한 실적 등 조사·

<u>1.</u> · <u>2.</u> (생략)	<u>연구에 관한 업무</u> <u>2.</u> · <u>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	---